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024. 4. 26.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경 과

의안 제324호로 2024년 4월 9일 이성수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제5조)
- 다. 실태조사·지원사업·업무의 위탁 등(안 제6조~제8조)
- 라. 민간전문가 활용·협력체계 구축·중복지원의 제한(안 제9조~제11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민법」, 「청소년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4. 4. 9. ~ 4. 13.)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조례안은

-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 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 주요 내용으로

- 제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이고 11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에 따른 지원 대상의 나이를 “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대상과 맞추어 서울시 지원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 안 제3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등에 근거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 안 제5조에서는 체계적인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안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실시 및 통계정보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본 조례안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9조에서는 전문성 있는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함.

## ○ 검토결과

- '22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가족돌봄청년<sup>1)</sup>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1주일 평균 돌봄 시간은 21.6시간, 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에 달하며, 이에 따라 가족돌봄청년의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일반청년 대비 2배 이상,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가족돌봄으로 인해 미래계획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37%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돌봄청년은 ▲생계 ▲의료 ▲휴식지원

1) 중증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세~34세(19~34세 청년 외에 13~18세도 대상에 포함)

▲문화·여가 순으로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이처럼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부각됨에 따라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시 자치구 11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

서울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자치구	조례명
1	서울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3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4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5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6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7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8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9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10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11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12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본 조례안은 앞서 살펴본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민간전문가 활용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자료

## 1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 3. 31.]

## 3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 4 청소년 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

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 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제공자는 이용자의 원활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